

의안번호	2205032
의 퇴 인	송언석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4.
추계번호	24A3802

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서비스산업¹⁾발전 기본계획 수립, 서비스산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98억 7,500만원(연평균 19억 7,5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130	-	-	-	-	130	130
서비스산업위원회 설치운영(안 제9조 및 제10조)	20	20	20	20	20	100	20
서비스산업 옴부즈만 설치(안 제28조)	1,929	1,929	1,929	1,929	1,929	9,645	1,929
합계	2,079	1,949	1,949	1,949	1,949	9,875	1,975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○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의무 규정

1) 이 법에 따른 '서비스산업'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을 말한다.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5조(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○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(이하 기 본계획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의무 규정
3	안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○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(이하 “부문별 시행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의무 규정
4	안 제8조(실태조사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	재량 규정
5	안 제9조 (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)	○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.	의무 규정
	안 제10조 (위원회의 구성 등)	○ 위원회는 위원장 2명, 당연직 위원 및 20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	
6	안 제11조(실무위원회)	○ 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의 사전 심의와 위원장이 요 청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.	재량 규정
7	안 제12조(갈등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)	○ 위원회는 서비스산업의 융·복합, 신사업 출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 ○ 정부는 각 사안별로 갈등해결에 필요한 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.	재량 규정
8	안 제15조(서비스산업 연구 개발 활성화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○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생 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산업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의무 규정
9	안 제16조(서비스산업 우수 연구개발 인증제도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인증할 수 있다. ○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, 세제지원, 구매지원, 포상 등을 할 수 있다.	재량 규정
10	안 제17조(서비스산업 연구 개발 결과의 보호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지식재산으로서의 권리로 확정될 수 있 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	의무 규정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1	안 제18조(표준화)	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의 투명성·전문성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고, 서비스 표준이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	의무 규정
12	안 제19조(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)	-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정보통신·인공지능·블록체인 및 데이터기술 등(이하 “신기술”)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·보급, 관련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- 정부는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·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	의무 규정
13	안 제20조(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및 다른 산업과의 융·복합 등 지원)	정부는 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,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의 융·복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고, 서비스산업의 융·복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 규정
14	안 제21조(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)	-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전문 연구센터에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(이하 “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- 기획재정부장관은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이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	재량 규정
15	안 제33조(서비스산업 전문 연구센터의 설치 등)	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 관련 조사 및 연구 개발 등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, 연구센터의 연구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
16	안 제22조(서비스 신사업의 창출 촉진)	-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조달기업에 대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. -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 및 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재정적·행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 규정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7	제24조(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.	재량 규정
18	제25조(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고려하여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·대학·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재량 규정
19	제26조(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)	○ 정부는 서비스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및 학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서비스산업계의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계약학과등을 설치·지원할 수 있다.	재량 규정
20	제27조(전문인력양성기관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산업 인력을 재교육 또는 재훈련하는 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재량 규정
21	제28조(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의 설치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서비스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둔다. ○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 -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의무 규정
22	제29조(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등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부문별 성장성, 혁신성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	재량 규정
23	제30조(창업지원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세제·자금·인력·기술·판로 및 입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.	재량 규정
24	제31조(세제지원 등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재량 규정
25	제32조(서비스 수출 지원)	○ 정부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서비스산업 수출정책협의회를 둔다.	의무 규정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6	제33조(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설치 등)	○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산업 관련 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○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구센터의 연구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재량 규정
27	제34조(서비스산업 인식 개선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국민 인식을 높이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재량 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재정수반요인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2	안 제5조(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○	—
3	안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×	· 기존 사업 범위내에서 추진 가능
4	안 제8조(실태조사)	×	· 기존 사업 범위내에서 추진 가능 — 기획재정부, 서비스산업실태조사, '25예산안 기준 180백만원 배정
5	안 제9조(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안 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	○	—
6	안 제11조(실무위원회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7	안 제12조(갈등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)	×	· 기존 사업 범위내에서 추진 가능 — 「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」 제11조(갈등관리심의 위원회의 설치)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
8	안 제15조(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)	×	· 기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 — 기획재정부, “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” 발표, 2024.11.14. 경제관계장관회의
9	안 제16조(서비스산업 우수 연구개발 인증제도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10	안 제17조(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의 보호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11	안 제18조(표준화)	×	· 기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 — 기획재정부, “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” 발표, 2024.11.14. 경제관계장관회의
12	안 제19조(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)	×	· 기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 — 기획재정부, “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” 발표, 2024.11.14. 경제관계장관회의
13	안 제20조(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및 다른 산업과의 융·복합 등 지원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14	안 제21조(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)	×	· 기존 사업 범위내에서 추진 가능

연번	재정수반요인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5	안 제33조(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설치 등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16	안 제22조(서비스 신사업의 창출 촉진)	×	· 기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 - “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 개최 등 서비스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”, 기획재정부, “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” 발표, 2024.11.14. 경제관계장관회의
17	제24조(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)	×	· 기존 사업 범위내에서 추진 가능 - 산업통상자원부,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수급 실태조사(통계청 승인 공식통계, 연간)가 매년 실시 중임
18	제25조(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)	×	· 기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 - 기획재정부, “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” 발표, 2024.11.14. 경제관계장관회의
19	제26조(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20	제27조(전문인력양성기관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21	제28조(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의 설치)	○	-
22	제29조(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등)	×	· 기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 - 기획재정부, “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” 발표, 2024.11.14. 경제관계장관회의
23	제30조(창업지원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24	제31조(세제지원 등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25	제32조(서비스 수출 지원)	×	· 기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 - 향후 5년(’25~’29년) 66조원 규모 서비스산업 수출금융지원 예정 (기획재정부, “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”, 2024.11.14. 경제관계장관회의)
26	제33조(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설치 등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 - 기존 출연연구원 서비스산업 연구 부서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없음
27	제34조(서비스산업 인식 개선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 중 신설에 해당하는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함에 따라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 - 제정안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, 옴부즈만 설치의 경우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 - 일부 재정수반 요인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거나, 기존 사업수행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전제함에 따라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 -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 요인의 경우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된 상황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(사업범위 및 규모, 사업대상 및 방법)을 특정할 수 없어²⁾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에도 이를 추계에 반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
 - 한편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조직(서비스경제과, 제1차관실)을 두고 관광/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 정책 및 서비스산업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 제정안의 서비스산업실태조사(매년 정책연구용역 1.8억원 예산편성 중)와 같이 일부 재정수반 요인의 경우 기존 조직과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

[표 1] 최근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관련 사업추진 경과

연도	사업추진 내용
2021	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및 후속조치 추진
2022	‘서비스산업발전TF’(경제부총리 주재, 민간전문가 공동팀장 체제) 구성 및 출범
2023	‘서비스산업발전TF’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
2024	제5차 서비스산업발전 TF 회의 개최(2024.12.10.)

자료: 기획재정부,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Ⅱ-1), 2024.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2) 가령 제정안 제33조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설치 등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센터 지정요건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(제382회국회,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(이원욱의원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101398호) 검토보고서, 2020.9. p.45.)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
-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억 3천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서비스산업 관련 기본계획(5년 주기) 수립에 소요된 연구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

[표 1] 제정안과 유사한 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연구제목	발주처	수행기관	계약연도	금액
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	국토교통부	건축공간연구원	2023	107
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	국토교통부	건축도시공간연구소	2019	88
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	국토교통부	한국교통연구원	2022	196
평균				130

주: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에 해당
 자료: 온-나라 정책연구(<https://www.prism.go.kr>)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2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130	-	-	-	-	130	13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등(안 제9조 및 제10조)

- 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2,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(구성) 제정안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위원장 2명, 당연직 위원 및 20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할 것을 규정함. 본 추계는 민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민간 위촉위원의 수를 20명으로 가정함
 - (횟수) 제정안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연간 분기별 1회씩 총 4회 개최될 것으로 가정

- (단가)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회당 25만원으로 가정하고, 추계기간 동안 고정되어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(연간 추가 재정소요) 민간위원 20인 × 25만원 × 연 4회 = 2,000만원
- 제정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원(연평균 2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3] 제정안의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서비스산업위원회 설치운영 (안 제9조 및 제10조)	20	20	20	20	20	100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의 설치(안 제28조)

- 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9억 2,9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옴부즈만³⁾” 제도의 운영경비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. 다만 제정안은 옴부즈만 지원조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 관계로 조직 운영 경비(임차료, 자산취득비 등)는 추계에 미반영함
 - 2025년 예산안 기준 중소기업 옴부즈만 예산은 총 33.8억원이 편성되었고, 이 중 옴부즈만 1명·전문위원 15명 위촉과 관련된 예산은 19.3억원으로 일반수용비(위원회 참석수당 및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등) 7.4억원, 전문위원 인건비 9.9억원 및 고용부담금 1.9억원으로 구성됨(다음 [표 4] 참조)

3) 중소벤처기업부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2조(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)에 근거하여 1명의 중소기업 옴부즈만(차관급, 임기 3년)을 위촉하고, 차관 직속 조직으로 옴부즈만지원단(고공단을 단장으로 하며 기재부·행안부·환경부·중기부·고용부·식약처, 지자체 3명, 유관기관 6명, 자체 채용인력 15명 등 연합조직 형태로 운영)을 설치·운영하고 있음

[표 4] 중소기업벤처부: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예산안 상세

(단위: 백만원, %)

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사업 예산 내역		2025년 예산안	
		금액	비중
·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		3,382	100.0
－ 소계(1+2+3)		1,929	57.0
1. 상용임금(110-03)	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 인건비	994	29.4
2. 고용부담금(320-09)	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 4대보험료 등	195	5.8
3. 일반수용비(210-01)	위원회 참석수당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, 지원단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 등	740	21.9

자료: 2025년 중소기업벤처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5] 제정안의 서비스산업 옴부즈만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서비스산업 옴부즈만 설치 (안 제28조)	1,929	1,929	1,929	1,929	1,929	9,645	1,92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태정림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태정립	02-6788-4652	jitae@assembly.go.kr